

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(긴급) 행정예고

부천시 원미구(중동먹자골목, 중동먹거리, 롯데백화점일원, 구버스터미널일원, 투나백화점일원, 로데오거리)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5년 4월 16일

부 천 시 장

1. 행정예고명 : 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(긴급)

2. 취지 및 목적

- 「주차장법」 제7조제3항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에 따라 우리시 원미구(중동먹자골목, 중동먹거리, 롯데백화점일원, 구버스터미널일원, 투나백화점일원, 로데오거리)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긴급자동차(소방차량 등)의 지장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구획의 폐지를 진행함.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폐지대상 : 일부 구획 127면 (총 708면수)

연번	주차장 구역	위 치	삭선 면수	총 면수
1	시청서쪽 구역 중동로 262번길	석천로169번길, 170번길, 183번길, 184번길, 중동로 262번길	19	69
2	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	길주로 300 일원 (중동 1257 일원, 중동 1258 일원, 중동 1259 일원)	71	415
3	투나백화점일원	부일로 223 일원 (상동 492 일원, 상동 489 일원, 상동 491 일원)	10	83
4	로데오거리	송내대로 59-2 일원 (상동 479 일원, 상일로94번길 11-1 일원, 상동 477 일원)	27	141

※ 일부 구간의 경우 정비 면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

4. 공고방법 :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, 게시판

5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주차장법 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5. 4. 16. ~ 2025. 4. 30.(14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(공고)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기한 : 2025. 4. 30.(수)까지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○ 제출방법

- 1) 우 편 :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
- 2) 전 화 : 032) 625-4772 3) 팩 스 : 032) 625-4759

소관부서	주차정책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권용한	전화번호	(032)625-4772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